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5년 3월)  
 - 웹툰 작가입니다.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

2025. 3. / 저작권상담팀(☎ 1800-5455)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용어 정의

-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 단어 각 5개, 총 10개)를 안내하고, 3월 저작권 상담사례 중 주요 사례를 요약 정리

<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 단어 순위>

순위	저작물 종류별	기타
1	캐릭터	등록
2	영화	이용
3	사진	침해
4	영상	계약
5	프로그램	제작

\*'저작권, 저작물'은 순위에 든 종류를 포괄하는 단어로 순위에서 제외

### < 3월 저작권 주요 상담 >

- (계약) 웹툰 작가입니다.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 계약을 처음 하게 되면 누구나 막막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 조항들의 의미를 잘 알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웹툰 연재계약을 할 때에는 ‘2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웹툰 연재 표준 계약서’<sup>1)</sup>를 참고하면 좋다.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에는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총 매출액, 판매 수량, 회차별 가격, 비용, 순 매출액 내역 등이 정산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웹툰 연재 시 휴재권 보장,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최근 소설·웹툰·만화 등이 인기를 얻으면 이를 영화·드라마·게임으로 제작하는 등 2차적저작물<sup>2)</sup>로 작성·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sup>3)</sup>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저작자는 원작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용되어 부가가치를 갖게 될 것인지 처음에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라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도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웹툰 연재계약서 제14조 제2항).

1)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51&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51&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최종방문일: 2025. 4. 29.

2)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별도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에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표준계약서가 없었으나, **만화 분야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표준계약서가 신설되어 참고하면 좋다.** 여기에는 2차적저작물 유형을 영상화, 공연화, 상품화, 이모티콘, 상품화, 게임화 등 구체적인 예시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 비율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한 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 시스템(챗봇)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

순위	질의
1	저작권법 상담사례
2	저작권 등록 문의
3	저작권 용어사전
4	저작권(이용 일반 및 제한)
5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6	저작권 분쟁조정
7	저작자(권리의 귀속 등)
8	저작권(Copyright)
9	캐릭터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10	저작권 법정허락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KCC-한빛’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5년 3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